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가단12936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2. 12. 6.

판 결 선 고 2022. 12. 20.

주 문

1. (인터넷주소 1 생략) 도메인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에 2022. 3. 31. 체결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 앞으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최혜승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합니다)은 의류 소매 및 인터넷쇼핑몰 운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자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인터넷 주소 1 생략)이라는 도메인(이하, '이 사건 도메인'이라 합니다)을 유상 양도 받은 수익자입니다(갑제1호증 사업자등록증 참조).

2. 손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16,325,5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소 367935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2. 1. 12.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그 주문은 아래와 같습니다(갑제2호증의 1 판결, 갑제2호증의 2 집행문, 갑제2호증의 3 송달/확정증명원 각 참조).

주 문

1. 피고(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6,32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3.부터 2021. 8.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따라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6,325,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현재까지 변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3.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사해행위

원고는 소외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소외 회사 소유(등록)의 이 사건 도메인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타채55749호로 도메인 압류명령을 신청하여 2022. 3. 25. 인용 결정을 받고, 위 결정은 2022. 3. 31. 제3채무자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송달되었는데, 위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2. 4. 7. 진술최고에 대한 회신서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C과 (인터넷주소 1 생략) 도메인 등록인이 불일치하여 도메인 압류 및 관련 진술서 제출이 불가합니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갑제3호증 도메인 압류명령, 갑제4호증 도메인 압류명령 및 진술최고에 대한 회신 각 참조).

그래서 원고는 이 사건 도메인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놓았던 자료를 다시 검토하여 보니, 위 도메인의 등록인은 소외 회사가 맞으나, 위 도메인을 통하여 의류를 판매한 후 입금 받는 계좌가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임을 확인한 후, 소외 회사가 원고를 비롯한 타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과다로 인하여 위 도메인을 통하여 의류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소외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가 아닌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 받는다고 추정하여, 소외 회사가 위 도메인을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입금 받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판매대금 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타채 5665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2. 4.

11. 인용 결정을 받고, 위 결정은 피고에게 2022. 5. 20. 송달되었고, 피고는 2022. 5. 27.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위 진술서에서 자신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 폐업을 고려(파산)라는 소외 회사로부터 돈을 주고 도메인을 양도 받았다고, 단지 홈페이지 명의인을 소외 회사에서 피고 명의로 변경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을 뿐, 이 사건 도메인을 통하여 소외 회사의 제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물품을 판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갑제5호증 도메인 홈페이지 출력물, 갑제6호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갑제7호증 제3채무자의 진술서 각 참조).

피고의 주장인 즉은, 소외 회사가 채무 초과 상태임을 익히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소외 회사의 재산인 이 사건 도메인을 양도 받은 것이라는 주장으로서, 사해행위임을 자인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4. 사해의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참조).

그런데 소외 회사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메인에 관하여 유상 양도계약을 체결

할 당시(원고가 정확한 시점을 알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도메인 압류영령 사건과 관련하여 2022. 3. 31. 기준 위 도메인 등록인자 소외 회사가 아니라는 제3채무자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진술서를 기준으로 우선 2022. 3. 31.이라고 추정합니다)에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판결 원금 16,32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3.부터 2021. 8. 19.까지 58일간 연 6% 비율로 계산한 돈 155,651원, 2021. 8. 20.부터 2022. 3. 31.까지 224일간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 1,202,272원 도합 17,683,423원(=16,325,500원 + 155,651원 + 1,202,272원)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었으므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폐업(파산)을 고려하였던 소외 회사가 위 도메인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이어서 결국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것이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도메인 유상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5.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사해행위의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2022. 5. 27.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위 진술서에서 자신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폐업을 고려(파산)라는 소외 회사로부터 돈을 주고 도메인을 양도 받았다고 주장한 점,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E이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F의 형수인 집의 거주인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2022. 3. 3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도메인에 관하여 체결한 유상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할 것입니다(갑제8호증 피고 법인등기부 등본, 갑제9호증 소외 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갑제10호증 주민등록초본 각 참조).

6. 원상회복의 방법

한편 대법원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수익자인 피고가 소외 회사와의 유상 양도계약에 따라 자기 앞으로 마친 이 사건 도메인 등록을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게서 소외 회사 앞으로 다시 도메인 등록을 변경하여야 한다 할 것입니다.

7. 결론

따라서, 소외 회사와 피고와 사이에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이 사건 도메인에 관하여 2022. 3. 31. 체결된 양도계약은 금 17,683,42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도메인을 소외 회사 명의로 등록을 변경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본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